
국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 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2026. 9.

금 융 위 원 회
금융정보분석원
정부합동보고

목 차

I. 추진 배경	3
II. 5대 전략 및 12개 이행과제 로드맵	5
III. 이행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6
[전략 1]	
1.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	6
2.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CFT/CPF 의무 부과	8
[전략 2]	
3. 의심거래정보 분석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 시스템 선진화	10
4. 마약 범죄·가상자산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 전략분석 강화	11
[전략 3]	
5.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 AML 의무이행 내실화	12
6.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14
7. 불법 금융거래 적발 및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	15
[전략 4]	
8.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16
9. 독립/확장물수 제도 도입	17
10. 국제공조 실효성 제고	18
[전략 5]	
11.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강화	19
12. NPO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20
IV. 향후 추진 계획	21

I. 추진 배경

1. 범죄 환경 · 양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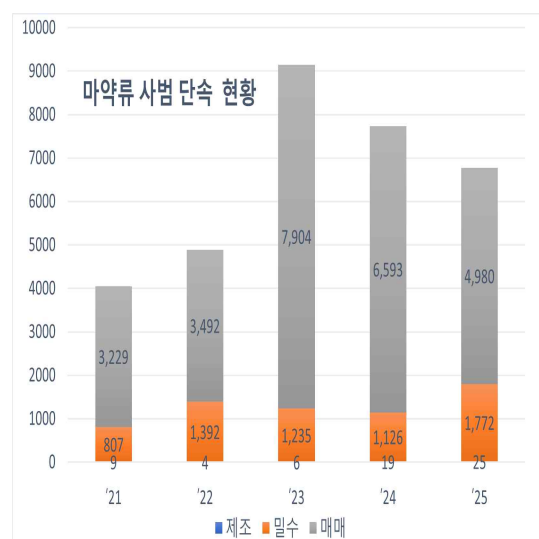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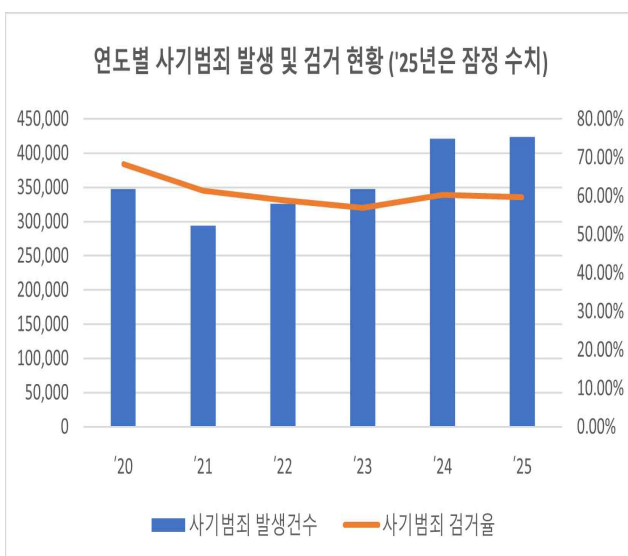
- '25년말 실시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위험은 취약 요인 및 수단과 양태 측면 모두 변화

* National Risks Assessment: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위험요인·취약점 분석

- 특히, 자금세탁 전제범죄로서 사기의 급증*과 가상자산 활용 범죄, 조직범죄 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진화하는 추세

* 사기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불법수익을 창출하는 범죄 중 하나(FATF 회원국 약 90%가 사기를 주요 전제범죄로 식별)로서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 유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4년 평균 처분 건수가 약 69,727건으로 모든 전제범죄 중 1위

- ▶[취약 요인] 외국인의 증가, 디지털화 진전 등 환경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금 세탁 취약요인의 등장(예: 외국인 관련 범죄,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범죄 등)
- ▶[범죄 수단] 불법 금융거래를 위한 가상자산·현금의 활용이 지속 확대 되고, 소셜 미디어(SNS)·메시징 앱 등을 통한 범죄자금 모집 용이성 증대
- ▶[범죄 양상] 민생침해 범죄들(사기, 조세포탈, 마약 등)이 고위험 자금세탁 전제범죄로서 급속히 확산중이며, 관련 범죄가 조직화·초국경화되는 경향



2. 자금세탁 등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 및 이행 강화

- **(기준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달(TF)·확산금융(PF) 범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국제기준(권고)을 강화

* 기술 발전으로 ML/TF 범죄가 고도화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초국경적 범죄 확대

- ①복잡한 법인 구조를 악용한 ML 범죄 예방, ②범죄수익의 추적·몰수 강화, 급증하는 ML/TF 범죄 대응을 위한 ③자원 배분 효율화, ④다양한 수단을 통한 불법금융 거래 확대 예방 등을 위해 관련 FATF 기준을 개정

<FATF의 강화된 국제기준 현황>

- ① **(권고 24-25_법인/신탁 실소유자 투명성)** 법인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해 법인, 신탁 및 기타 법률관계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22~23년, 개정완료)
- ② **(권고 4-38_몰수 및 잠정조치)** ML/TF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자산 회복을 위해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 및 유죄판결없는 몰수 제도 도입 등 (23년, 개정 완료)
- ③ **(권고 1_위험기반접근)** 금융포용성 확대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완화된 고객확인 등 간소화된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의무 부여(25.2월, 개정 완료)
- ④ **(권고 16_자금·결제 투명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송금·결제 수단 및 서비스 다양화에 맞춰 송금·결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 명확화 및 송금 메시지에 포함할 필수정보 보완 등(25.2월, 개정 완료)

- **(이행 강화)** 각국 AML/CFT 시스템의 법적·제도적 기반에 대해 평가한 4차 라운드와 달리, 5차 라운드는 법·제도 운영성과(효과성, 11개 항목)를 평가

- 즉, FATF 권고 40개 항목에서 요구하는 법·제도는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행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 방식으로 강화 (우리나라 '28.3월~ 수검)

- **(상호평가 영향)**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의 금융·사법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척도로서 금융회사,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

- 각국은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①정규 후속점검(1등급), ②강화된 후속점검(2등급), ③ICRG 점검 대상(3등급)으로 분류 (☞ 상세내용 별첨 참조)
- 특히 평가 결과 3등급 국가(ICRG 점검)에 편입될 경우, **타국으로부터 국내 송금 편의성 저하** 및 한국 유학생들의 **해외 계좌 개설 시 불편** 등 초래

⇒ 자금세탁 범죄 관련 **국내외 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과 정책 재정립이 필수적**

II. 5대 전략 및 12개 이행 과제 로드맵

추진 목표



국가 AML·CFT·CPF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도약



추진 전략

[전략 1]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전략 2]

의심거래정보
분석역량 강화



[전략 3]

위험기반접근·감독
제도 선진화



[전략 4]

범죄수익 환수
촉진을 위한
제도 확대



[전략 5]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제재 강화



전략

이행 과제

기대 효과

[전략 1]



- 1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
- 2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CFT/CPF 의무 부과



· 선진화된 AML 시스템
구축 국가 도약

[전략 2]



- 3 의심거래정보 분석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 시스템 선진화
- 4 마약 범죄·가상자산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 전략 분석 강화



· FIU 분석 정보의 범죄
수사 활용성 제고

[전략 3]



- 5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 AML 의무이행 내실화
- 6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 7 불법 금융거래 적발 및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



· AML 제도·감독 선진화를
통한 불법 금융거래
차단·예방 성과 극대화

[전략 4]



- 8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 9 독립/확장물수 제도 도입
- 10 국제공조 실효성 제고



· 불법 자금의 추적/
환수 성과 극대화

[전략 5]



- 11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강화
- 12 NPO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
금융으로부터 안전한
모범국가 위상 제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신뢰받는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III.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

전략 1 국내 AML/CFT/CPF 시스템의 FATF 기준 정합성 제고

(1)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BO) 관리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FATF는 법인·신탁에 대한 실제소유자 정보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하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흡한 실정

- 금융회사등은 특금법에 의거 법인·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검증하나, FIU 및 권한당국의 정보접근이 제한됨

* 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수익자를 확인[다만, 개인/법인의 경우와 달리 신탁의 실제소유자를 별도로 확인할 의무는 없음(업무규정 §20⑤)]

- 관계부처 등*이 법인 정보의 일부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소유자 정보는 포함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측면

* 법무부(법인 등기정보), 금감원(상장기업), 국세청(주주사원 정보), 공정위(기업집단) 등

◇ FATF 권고

■ (R.24) 법인 투명성과 실제소유자 (BO: Beneficial Owner)

- (체계) 권한 당국이 법인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적시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법인은 자신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금융회사등에 제공
 - 권한당국은 법인 실제 소유자 정보를 법인 등록부 또는 대안적 체계를 통해 관리
- (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는 적절·정확·최신의 정보이어야 함
- (접근) 권한당국이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신속·효율적 접근권한 보유

■ (R.25)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제소유자

- (체계) 권한 당국이 신탁 실제 소유자 관련 적절·정확·최신의 정보를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신탁 실제소유자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 권한 당국, 신탁서비스 제공자·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회계사·변호사·금융기관 등의 정보 활용을 통한 접근 보장
- (정보)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존재시), 각 수익권원 순위 및 수익권의 대상, 신탁 전반에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타 자연인에 관한 적절·정확·최신의 정보

나. 개선 방안

□ 투-트랙(Two-Track) 접근을 통한 법인·신탁의 실제소유자 관리체계 도입 추진

○ (TRACK A)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

① 의심거래정보(STR) 대상 법인·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

- 금융회사등은 STR 보고시 실제소유자 정보도 제공하고, FIU는 국세청*·한국평가데이터·신용정보원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 검증

* FIU가 정보 검증을 위해 국세청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특금법 시행령에 명기

② 모든 고객에 대한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

- 금융회사등이 모든 법인·신탁*에 대한 실제소유자 정보를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집행기관**이 정보를 교차검증

* 법인·신탁에는 실소유자 정보 성실제공의무를 도입

** 법집행기관이 상시열람하도록 하고, 오류발견시 FIU에 보고하도록 하여 검증

○ (TRACK B) 법인·신탁(모든 법인·신탁 대상) 등록부 제도 도입

- 법인·신탁이 직접 실제소유자 정보를 제출하고, 권한당국*이 법인·신탁에게 직접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도입

* FIU, 법무부, 재경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부처별 현황	■ (재경부): OECD 동료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법인, 법률관계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 추진중 ■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협의하여 상업등기법 개정 등을 통해 위장법인 적발 등 법원 등기 제도 및 관리 시스템 정비 추진
-----------	--

◇ 해외 사례

- 법인 실제소유자 등록부 도입 국가 : 영국,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 법인이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고 협력할 의무를 규정
- 대안적 체계 마련 국가 : 스위스
 - 법인 스스로가 자신의 등록부를 보유하고, 권한 당국 요청시 즉시 제공

☞ (필요조치) (트랙 A) 특금법 및 하위 법규 개정/ 정보검증 관련 관계부처(국세청 등) 협의
(트랙 B) 법인·신탁 등록부 운영을 위한 근거법규 마련·개정 등

[2]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등 의무 부과

가. 현황 및 문제점

- **FATF**는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부과를 권고하고 있으나, 카지노를 제외한 여타 직역들은 의무 대상으로 규율하지 않은 상황

* DNFBPs(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카지노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회사·신탁설립전문가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금융업종

◇ FATF 권고(R.22, 23, 28)

-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고객확인, 자료보존, 내부통제, 의심거래보고 의무**(단, 직업 특성을 고려한 일부 의무는 면제 가능_ 예: 변호사 비닉특권 등 고려) 부과를 권고

〈비금융전문직·사업자 관련 FATF 국제 기준 도입 업종 및 적용 업무범위〉

업 종	적용 업무범위
카지노 사업자	고객이 기준금액(USD/EUR 3,000) 이상 금융거래 관련 시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매매 관련 거래 참여시
귀금속상	기준금액(USD/EUR 15,000) 이상 현금 거래 시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	① 부동산 매매 ② 고객의 자금·증권 등 기타 자산 관리 ③ 은행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의 관리 ④ 회사 설립·경영·관리에 관여 ⑤ 법인·신탁 등 설립·운영·관리, 사업체 매매 관련 거래 준비·수행 ※ 송무 활동은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신탁 및 회사서비스제공자	① 법인의 설립 대리인 ② 타인을 위한 명목상 주주 ③ 신탁 수탁자 및 유사 역할 수행 등 관련 거래 준비·수행시

- **감독기관·자율규제기구**는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권고

나. 개선 방안

- **(의무 부과)** 각 전문 직역별 적용대상 업무 범위와 전문성, 자금세탁 노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AML 의무**(고객확인, 자료보존 등)를 차등 부과 검토

- 규제 부담을 고려하여 직역별 협회 등에 제도운영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세부 사항은 이해관계자 협의·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부과 방안 (예시)>

◇ 변호사·외국법자문사·회계사·세무사

- (대상 거래) 부동산 매매, 고객의 계좌·자산관리, 법인·신탁의 설립·경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적용 의무) 법률상 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 주요 AML 의무를 부과하되, 세부사항은 직역별 협회* 기준으로 운영

* 변호사·외국법자문사 : 대한변호사협회, 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등

◇ 부동산중개인, 귀금속·보석상

- (대상 거래)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 매매거래 관여하는 경우, 귀금속·보석상은 일정금액 이상(예: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 연결거래 포함[일정기간(7일) 이상 동안의 거래 합계가 1천만원 초과시]

- (적용 의무) 직역별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연루 가능성 등 업역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 의무 차등 부과

[참고] 금융업권/특정비금융사업자 등의 자금세탁 위험도 ('25년말 국가위험평가 결과)

분류	위험도	분류	위험도
현금	높음	보험업	중간
가상자산	높음	소액해외송금업	중간
전자금융업	중간 높음	카지노/공인중개사	중간
은행	중간 높음	변호사	중간 낮음
귀금속상	중간 높음	회계사	중간 낮음
금융투자업	중간 높음	세무사	중간 낮음
환전영업자	중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간 낮음
저축은행·상호금융	중간	대부업	낮음
여신전문금융업	중간	공증인	낮음

☞ (필요조치) 법률 개정(특금법 또는 각 직역별 기본법) 또는 각 직역 단체별 AML 의무 이행 지원 준칙 마련/ 각 직역단체 및 소관 부처와의 협의

전략 2 의심거래[STR] 정보 분석 역량 강화

[3] STR 분석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 시스템 선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기술 발전 등으로 자금세탁의 속도·복잡성이 증가하고, 의심거래보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現시스템 노후화로 거래흐름 파악·분석에 한계

* 가상자산 관련 STR 보고건수 급증: '21년 199건 → '25년 62,055건

** 전체 의심거래보고건수 급증: '21년 884,655건 → '25년 1,333,391건

- 또한, 심사분석 인력 부족*으로 심사분석에 평균 약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에 제약

* 한국 FIU(80명)는 他 주요국(호주600명, 독일700명, 프랑스220명)에 비해 인력 부족

나. 개선 방안

- STR 분석 단계별 시스템의 고도화 및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도입, 심사분석 인력 확충을 통해 FIU의 범죄자금 분석·추적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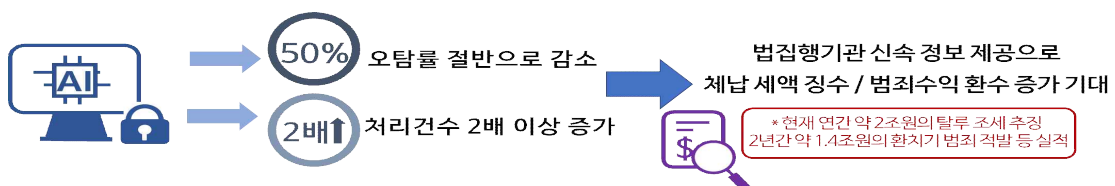
- (시스템)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및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 도입 (예: 체이널리시스)을 통해 심사분석 처리시간 단축 및 처리건수 증가

* '27년 예산 확보 추진중(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81억원,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19억원)

- (인력) 심사분석 인력(現 43명)을 STR 현황을 고려하여 대폭 확충

→ 법집행기관 앞 정보제공 확대(2배↑)로 범죄수익 환수(예: 조세추징 年2.2조원→4조원), 범죄자 검거 등 법집행 효과 대폭 개선 기대

■ 심사분석시스템 AI 도입시 기대효과



☞ (필요조치) AI 기반 분석시스템 및 가상자산분석·추적 솔루션 도입 예산·인력 확보

[4] 마약범죄 · 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 전략분석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 발달과 함께 불법금융거래의 수단도 다양화·고도화되고 자금의 이전 속도·자금세탁의 복잡성(초국가 범죄 등)이 증대되고 있으나,

○ 의심거래·불법자금의 패턴이나 유형을 파악하여 본격적인 수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범죄 자금을 추적·분석할 전략과 분석관의 전문성에 한계*

* 4차 라운드 FATF 평가 결과, FIU의 전략분석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권고됨

나. 개선 방안

□ 전략분석* 활성화, 교육·훈련을 통한 심사분석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세탁 양상에 대한 분석역량 및 법집행기관 지원 강화

* STR의 흐름, 사회적 이슈·범죄발생 동향 및 고위험 전제범죄 등을 고려하여 테마를 선정하고, FIU 시스템에 축적된 테마 관련 STR을 집중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

< 최근 전략분석 사례('23.12 ~ '24.1) : 불법자금 대상 >

- 테마 :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명의 위장을 통한 불법재산 은닉 등 조세범죄 분석
- 방법 : 주요분야(대부업, 대출, 카드깡 등)별 맞춤형 알고리즘을 통해 불법자금 관련 STR·CTR 내역 추출 ⇒ 선별된 혐의대상자 등 상세분석 → 결과 분석보고서 97건 국세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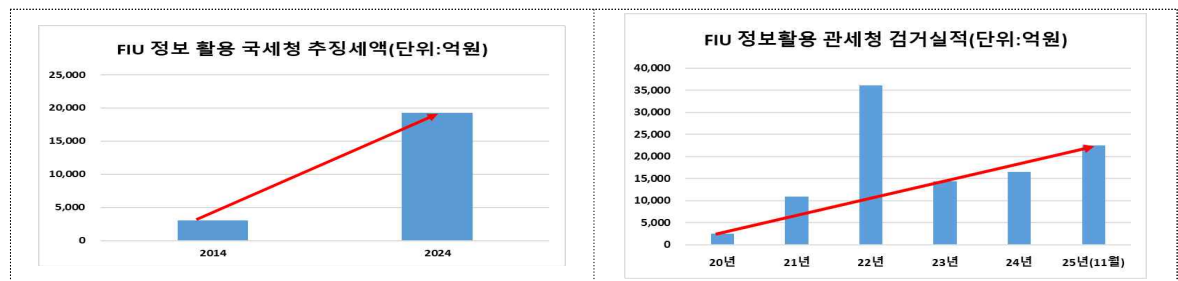
○ FIU 제공정보의 수사기관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전략분석팀을 상시화**하고, 유형별 범죄의 분석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강화

* 전략분석팀에 검·경 전문 수사관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수사기관과의 연계성 제고

** 현재 마약·스캠·불법온라인도박 등 초국가범죄 관련 전략분석팀 구성·운영 중('25.11월~)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의 일제보고(은행·가상자산업계) 및 축적된 STR 활용)

*** 심사분석 기법·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최신 동향 관련 전문가(체이널리시스 조사관 등) 교육 실시

<FIU 제공정보 활용 사례(국·관세청)>



☞ (필요조치) FIU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전략 3 위험기반접근·감독 (RBA·RBS) 제도 선진화

[5]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RBA) AML 의무 이행 내실화

1 금융회사등의 AML 의무 명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등이 핵심적 AML 의무(KYC·STR 등)를 이행할 수 있는 견고한 법적 기반이 필수적

* **KYC** (고객확인제도) : Know Your Customer, **STR**(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현행 특금법 체계상 고객확인 등 핵심 AML 의무의 범위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며, FATF 국제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나. 개선 방안

- **(내부통제 및 책무구조)** 특금법에 AML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또한 산재되어 있는 AML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등 금융회사등이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 의무와 감독·제재 체계를 정비

- **(위험기반접근 강화)** STR(의심거래) 과잉 보고 방지·품질개선, 저위험 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고객확인(SDD)* 등 위험기반접근의 적극적인 활용 활성화

* **CDD**: Customer Due Diligence / **SDD**: Simplified Due Diligence

- 고객확인 대상과 시기, 확인 항목·재이행 제도, 신탁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등을 FATF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
-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검토·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 절차·책임체계 등 적정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STR 적시성 제고

☞ **(필요조치)** 특금법 및 시행령 등 개정

2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FIU는 FATF 기준(권고 1)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AML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평가 시스템*을 개발·시행 중

*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자체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고, 감독 당국 역시 회사별·부문별 검사감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평가 모델로 총 290개 (위험노출도 201개, 위험관리도 89개) 지표, 회사별 특성에 따라 적용 지표 차등화

◇ FATF 권고(R.1)

- 금융회사는 스스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권한 당국에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야 함

※ FATF 상호평가(2020) 결과 지적사항

- ▶ 위험기반 감독의 효과성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체평가 정보에만 의존
- 금융회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

- **(문제점)** 제도이행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사실상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AML 위험관리 사각지대 발생
 - 특히, 평가에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인 평가, 허위·부실정보를 이용한 평가 등으로 결과의 공신력이 낮고, 결과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
 - 또한, 평가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평가 결과의 신뢰성 담보에도 한계

나. 개선 방안

- 제도이행평가를 법제화·의무화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 미이행·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다만,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 등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평가주기 연장, 평가항목 간소화 등)도 마련

☞ **(필요조치)** 특금법 및 시행령 등 개정

[6]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가상자산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거래의 양적 확대, 거래 속도 증가 등으로 AML 감독의 역할도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상황

- 한정된 자원으로 감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고위험·취약 분야에 감독 자원을 집중하는 위험기반감독(RBS: Risk-Based Supervision)이 핵심

□ **(문제점)** AML 감독이 다양한 기관에 위탁*됨에 따라 각 기관별로 감독·제재 수준이 상이하고, 대부분 낮은 수준의 제재**로 실효성 저하 우려

* (금감원) 은행, 보험 등, (과기부) 체신관서,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세청) 환전영업자, (중기부) 벤처조합 등, (제주도청) 제주 소재 카지노, (상호금융중앙회) 단위조합 등

** 78.3%가 현지 조치로 종결되고, 문책·주의사항은 11.2%에 불과(25년 기준)

- 또한, 수탁기관간 감독 역량이 상이하고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기반 검사·감독 및 시장 모니터링에 한계

나. 개선 방안

□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 등*에 검사·감독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검사 확대 등 AML 검사 강화**

* 자금세탁 위험성, AML 제도이행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검사계획을 수립

** FIU 직권 검사지원근거 마련 여부 등 검토

- 검사매뉴얼 개정, AML 제재 사례집 마련, 검사원 교육 등을 통해 AML 검사를 표준화하고, 제재 수준 일원화 유도

- 위험기반 감독 내실화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 도입 검토

*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시 해당자가 시정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 절차를 종결하거나 제재 갈음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미이행시 가중 제재

☞ **(필요조치)** 특금법 및 시행령 등 개정

[7] 불법 금융거래 적발·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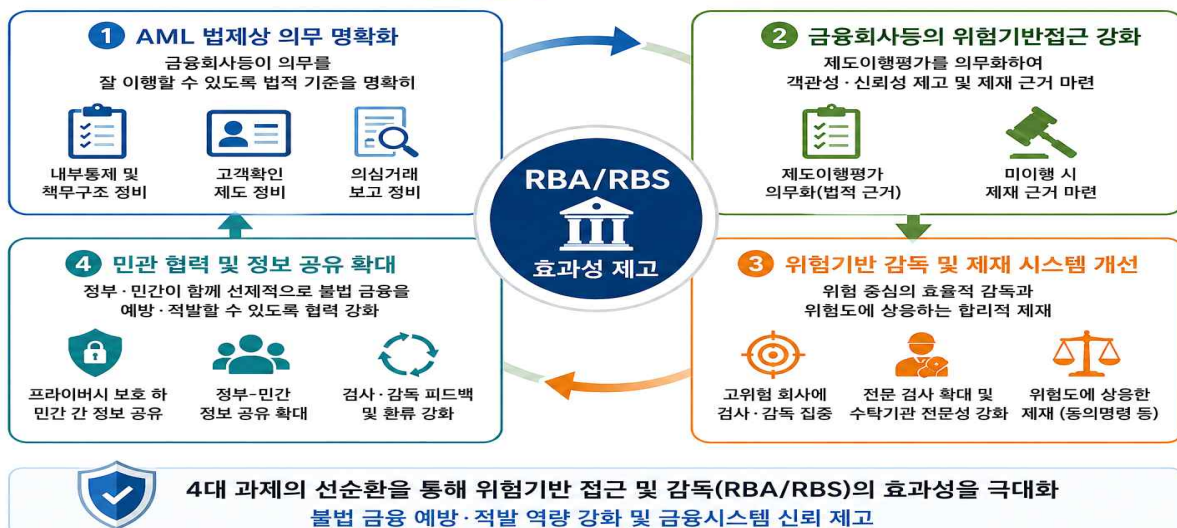
가.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국제적으로는 초국가범죄·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가 증가하고, 국내적으로는 신종피싱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액이 급증
 - 범죄 적발을 위한 FIU, 수사·감독 당국의 대응 노력 등 공공 부문의 역할만으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불법 금융거래 예방·대응에 한계

나. 개선 방안

- (정보 공유) 불법 금융 활동의 예방·대응 성과 중심으로의 AML 체계 전환 및 ML/TF 의심 거래의 식별 및 보고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 확대
 - (당국→민간) 금융회사등이 제공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비식별화하여 의심거래 참고유형 등 제공
 - (민간 사업자 간) 의심거래 탐지 지표, 주요 의심거래 탐지 사례 등을 보고대상 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인프라 운영
- ※ 단 정보공유 오·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역효과 방지 차단장치 의무화
- (검사·감독 결과 환류) 금융·가상자산 부문의 AML 전문성·책임성 강화 및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검사·감독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환류 강화

RBA/RBS 제도 선진화 4대 핵심과제 선순환 구조로 효과성 제고



전략 4 범죄수익 환수 성과 극대화

[8]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범죄수익과 관련있다고 의심되는 계좌라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없이 계좌 동결이 불가능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보이스피싱·자본시장 불공정거래

-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확대에 따라 범죄자금흐름 조기 차단 및 몰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좌정지 제도의 필요성 대두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국에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권고('23.10월)

나. 개선 방안

- ① 신종피싱 범죄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현행 특금법(고객확인)을 활용하여 거래정지를 6.30일부터 신속히 시행(시행 2개월, 약 5,600건 정지)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국조실장 주재, 5.27일)에서 방안 既발표

- 금융회사는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신속히 임시 거래정지(7일간) → FIU에서 본정지 필요성 검토 후 최대 60일간 추가 정지

* 거래정지 기간 동안 경찰은 수사 등을 바탕으로 범죄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 등 조치

- ② 민생침해범죄(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일반에 대해서도 특금법 개정을 통해 범죄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법제화 추진

- 수사기관 요청, 금융회사 요청, FIU 자체 정보분석 등을 기반으로 FIU에서 거래정지를 결정

-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 절차 마련

☞ (필요조치) 신종피싱 거래정지 운영현황 점검, 특금법 및 시행령 등 법령 개정

[9] 독립·확장몰수 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심거래 정지제도와 함께 불법자금 계좌의 동결 및 불법자금의 몰수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 강화 필요

나.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①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 확대 및 ②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 범죄자가 보유한 범죄수익 외 ①다른 재산까지 몰수가 가능하도록 보장, 범인의 사망·도주 등으로 ②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몰수·추징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 고위험 전제범죄 대상 등 위험기반접근을 고려하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안 (8.20, 범수법 개정 완료) 시행 준비



☞ (필요 조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8.20) 및 시행 준비

[10] 국제공조 실효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자금세탁방지 대표 기구인 FATF·Egmont 논의 참여 및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 MOU 체결* 등 양자·다자간 공조 시행 중

- ▶ (FATF) 美·英·日 등 40개 회원국을 포함 FATF 기준을 이행하는 지역기구 9개 등 총 약200개국과 ML·TF·PF 대응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기준 이행 등 논의
- ▶ (EGMONT)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간 정보교류 등 AML/CFT 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 협의체로, 현재 182개국 FIU가 회원으로 활동

* (MOU 체결 현황) 26.1월말 현재 72개국 대상 MOU 체결('25.12.15. 오만 등)

- 캄보디아·미얀마 사이버 스캠·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대화, 의심거래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강화 필요
- FATF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협력도 필수적

나. 개선 방안

- 역내 관련국가(중국·싱가포르 및 메콩 5개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태국·미얀마)과의 단계별 협력체계 마련 및 국제기구 등 활용 공조 추진

* ①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요청 서신 발송→②실무급 논의→③FIU 원장단 양자/다자 면담

- (역내협력 강화) 한국인 대상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신속한 협력을 위해 실무급 핫라인 구축 및 고위급 대화 추진, STR 정보교환 활성화 등
- (국제기구 활용) 초국가 조직범죄 관련 FATF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하고, 아·태지역 후발국의 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지원

-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ARIN-AP)**」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은닉된 범죄수익 추적·동결 및 환수

- ▶ (SEAJust) 한국이 UNODC에 지정/공여하는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공조 중앙기관간 네트워크'로, 동남아시아 국가,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등 22개국 가입('26. 4. 기준)
- ▶ (ARIN-AP) 아·태 지역 범죄수익환수 관련 각국 법집행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로서 30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3년 설립 이래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주도적 역할 수행

☞ (필요조치) 국제협력 강화 및 FATF 평가 대응을 위한 조직(예: 국제협력과 신설) 확보

전략 5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제재 강화

[11] TF·PF 범죄 관련 정밀금융제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UN, FATF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등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반인권 범죄에 대응하여 각국이 일정한 정밀금융제재를 이행할 것을 요구*

* FATF 권고 6, 7 등에 따라 ①금융회사 등의 예방조치(CDD, STR 보고 등), ②유엔안전 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밀금융제재 등을 이행할 필요

○ 이에 우리나라는 '테러자금금지법'을 통해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체계를 가동중

* 금융거래·재산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 등)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는 허가가 없을 경우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업무 취급 금지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밀금융제재는 포섭범위 및 실제 이행수준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평가*

* FATF는 지난 상호평가(20년)시 정밀금융제재 관련 평가항목 다수를 "미흡"으로 평가

○ 정밀금융제재의 대상이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로 한정 → 최근 대두되는 초국가범죄 등 여타 반인권적 중대범죄에 적용 어려움

○ 규제수범 주체가 금융회사등으로 한정 → FATF가 수범주체로 명시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가 수범대상에서 제외

○ 금융회사등이 정밀금융제재 이행현황을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금융위원회의 규제수범자 앞 감독·검사 권한도 미비

나. 개선 방안

□ 테러자금금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FATF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

○ **(제재 대상자 범위)** 초국가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 (현행) 테러·핵확산 관련자 지정 가능 → (개선) 국제 범죄조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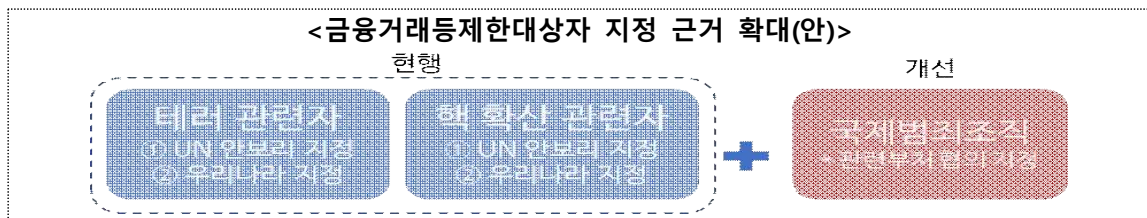
- **(규제수범대상 확대)** 금융회사 외에 제재대상자의 자산을 보관·운용할 수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정밀금융제재 이행 수범자*로 포함 검토

* 특정비금융사업자가 제재대상자와 자산의 보관·운용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규제이행 확인·점검 강화)** 금융회사등에게 거래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대상자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금융위가 정밀금융제재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도 명확화

- **(지침 제공)**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거래제한의 이행 방법 등 정밀금융제재 이행을 위한 지침 제공



[12] 비영리단체(NPO)의 TF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FATF는 NPO의 TF 악용 방지를 위해 각국이 자국내 NPO들의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 FATF 제4차 상호평가 지적사항_권고(R8)

- FATF에서 정의한 모니터링 대상 NPO에 부합하는 국내 NPO 확인 미흡, 모든 NPO대상 포괄적 TF 악용 방지 정책 부재, 고위험 NPO 및 기부자 커뮤니티 대상 아웃리치 부재, 규모가 큰 NPO의 관련 보고/공시 의무 부재, 의무 위반시 임원 제재근거 부재 등

나. 개선 방안

- **(관련부처 협의회 개최)** 비영리단체 TF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특금법 하위 운영규정 제36조)를 통해 FATF 기준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예: 비영리법인 임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고위험 NPO의 보고/공시 의무관련 제도 개선 등

- **(아웃리치)** 고위험 NPO 대상 교육자료(지침서, 체크리스트) 배포 및 교육 실시

IV. 향후 추진 계획

- ① 「국가 AML/CFT/CPF 전략과 정책」(이하, 국가 AML 정책)의 이행 점검
 - 대테위 실무 회의를 통해 국가 AML 정책에 대한 이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대테위 보고 추진
 - ② 제5차 FATF 상호평가 수검('28.3월~'29.6월)에 활용
 - 정책 효과성 입증을 통한 성공적인 제5차 FATF 상호평가 결과를 목표로 신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등이 필요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 부처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세분화하고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통해 세부 과제를 이행 및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
- 명칭: 『FATF 상호평가 대응단』
 - 참여 기관*: FIU·금융위(본부)·법무부·재경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국조실·공수처·선관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국정원·금감원 등
 - * 핵심 추진과제, 입증자료/데이터 확정시 참여 기관(부서) 변동 가능성 존재
 - 목표: 국가 ML/TF/PF 위험 이해를 기반으로 AML/CFT/CPF 정책 추진 및 FATF 기준이행 성과 입증
 - 운영 원칙: ①FATF 효과성 평가 기준(11개 항목)별 주무 부처의 관리하에, ②취약 분야에 우선한 과제 추진 및 ③부처별 성과 입증·평가 대응
- 특히, 부처간 협업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호평가 대응단을 8개 작업반으로 편성하고 주무부처·기관의 책임하에 작업반별 실적 점검('26.3분기~)

FATF 상호평가 대응단 (단장: FIU 원장)

정책반	국제협력반	감독1반	감독2반	BO 투명성반	정보분석반	ML반	TF/PF반
FIU (전부처)	법무부/검찰 (FIU, 금감원 법집행기관)	금융위/FIU (금감원 관세청)	FIU (국 토 부, 변협 화계협)	법무부/FIU (기재부, 국세청)	FIU (법집행 기관)	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FIU/국정원/외교부 (경찰, 국세청)

→ 테러대책위·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 등을 통해 신규 AML 정책 효과와 FATF 상호평가 대응단 작업반 운영 성과를 주기적(예: 반기 1회)으로 점검

참 고 1

과제별 추진 일정(안)

	이행 과제	추진 사항	일정	협조 부처
전략 1	(1)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	■ 1단계_법제 정비, 금융회사의 STR 대상 법인신탁의 BO 정보 확보	~'26년 하	금감원
		■ 2단계_금융회사의 모든 고객에 대한 BO 정보 확보 및 법집행기관의 BO 정보 교차 검증	~'27년 하	국세청
		■ 3단계_법인신탁의 BO 등록부 도입	중장기	법무부, 재경부, 법원행정처 등
	(2) 특정 비금융사업자 AML/CFT/CPF 의무 부과	■ 1단계_법제 정비, 지역별 핵심 AML 의무 선별, 지역별 협회 등과 협의	~'26년 하	법무부, 금융위, 국토부, 산업부
		■ 2단계_지역 협회별 AML/CFT 지침 마련 등	~'27년 상	/변호사·회계사 협회 등
전략 2	(3) 의심거래정보 분석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 시스템 선진화	■ 전문인력 확충	~'27년 상	행안부, 예산처, 인혁처, 법집행 기관(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 AI 기반 분석시스템 도입 및 VA 추적 및 분석 솔루션 도입 예산 확보 등	'27년~	
전략 3	(4) 마약 범죄·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 전략분석 강화	■ 전략 분석팀 설치·운영 및 점진적 확대	'26년 하~	예산처, 금감원
	(5) 금융회사등의 위험 기반 접근 AML 의무 이행 내실화	■ 1단계_법제 정비, 제도이행평가 시스템 개선 예산 확보 등	'26년 하~	
		■ 2단계_제도이행평가 실시	'27년~	
	(6)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 검사 수탁기관 교육 등 ■ 감독당국별 위험기반 감독 활동 계획 수립 및 제재 관련 현황 진단 등	'26년 하~	
전략 4	(7) 불법 금융거래 적발·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	■ 민간간 정보공유 법적 근거 마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26년 하~	금감원
	(8)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 신종피싱범죄 대상 거래정지 시행	'26. 6.30~	경찰청, 은행 연합회 등
		■ 법개정 및 민생침해범죄로 거래 정지 대상 확대	'27년~	
	(9) 독립/확장물수 제도 도입	■ 계류중인 범수법 개정 완료	~'26년 하	법무부, 검찰
전략 5	(10) 국제공조 실효성 제고	■ 부처별 counterparty와의 공조 활성화(정보교환, MLA 등)	상시	법무부, 검찰, 경찰 등
	(11) TF/ PF 관련 정밀 금융제재 강화	■ 법제 정비 및 지침서 마련	~'27년 상	대 테 러 센 터 , 외교부, 국정원 등
	(12) NPO의 TF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 NPO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및 NPO 대상 교육 실시	'26년 하~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1. 상호평가 개요

- **(상호평가 개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현황을 평가*

* 상호평가는 통상 5~6년 주기로 시행(5차 라운드는 '24.8월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7개국이 평가를 마쳤으며, 한국은 '28.3월 평가 개시, '29.6월 총회 토론/채택)

- FATF 회원국 전문 평가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현장실사 포함, 약 14개월)하고, FATF 총회 토론을 통해 최종 채택

- **(상호평가 영향)**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의 금융·사법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척도로서 금융회사,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

- 각국은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①정규 후속점검, ②강화된 후속점검, ③ICRG 점검 대상으로 분류되며, 후속 점검의 주기가 차등화*

※ 후속점검 주기

① 정규 후속점검(RFU):	보고서 채택 후 3년차 1회
② 강화된 후속점검(EFU):	보고서 채택 후 매년 연 1회
③ ICRG 점검:	보고서 채택 후 매 총회마다(연 3회)

- 후속 점검에서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FATF의 해당국 대상 추가 조치(등급 하향, 단 ICRG 점검국가는 블랙리스트 등재)* 가능성

* 해당국 고위급에 촉구 서한을 발송, FATF 미션단의 고위급(장관급) 면담 실시 등

- 특히, 평가 결과, 3등급 즉 “ICRG* 점검대상(그레이리스트)”에 편입될 경우 연중 3회 개최되는 FATF 총회마다 개선 성과를 보고해야 하고,

*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 FATF 산하 실무그룹

- 이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EDD)*등 각국의 추가 조치로 인해 타국으로부터 국내 송금 편의성 저하 및 한국 유학생들의 해외 계좌 개설 시 불편 등 초래

* 고객의 신원·실제소유자를 확인·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추가 확인

□ **(4차 상호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2등급)”로 평가(‘20.4월)되어, 상호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주기적(‘21년~‘24년, 매년 10월 총회)으로 개선사항 보고 → 제4차 보고서 **1등급으로 상향**(‘24.10월)

▶ **[주요 지적사항]** ①특정비금융사업자* 부문에 대한 AML/CFT 의무 부재, ②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의 확보·확인·검증 체계 미흡, ③금융회사등의 고위공직자 등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EDD 이행 의무 미부과 등

* Designated Non 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신탁 및 회사설립 전문가,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 **[핵심 권고]** ①금융정보분석원의 STR 분석 전문성 및 IT 자원 확충, ②범죄 자산의 실제 환수액을 늘릴 수 있는 조치 모색 및 환수 활성화, ③비영리 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교육·모니터링 실시 등

→ 주요 지적사항은 법률 및 제도상 미비점으로, 특히 특정비금융사업자 관련 결함은 다수의 기술 등급(Rec)과 효과성 평가(IO) 항목에 부정적 영향

□ **기술등급(Technical Compliance):40개 권고(Recommendation) → 32개 이행**

R1	국가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 접근법 적용	R2	AML 정책 조정 및 협력	R3	자금세탁 행위의 범죄화	R4	범죄 자산의 동결, 몰수 및 가해 정지	R5	테러자금 조달 행위의 범죄화	R6	테러자금조달 행위 정밀 금융제재
LC		LC		LC		C		LC		PC	
7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행위 정밀금융제재	8	비영리단체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	9	금융회사등 비밀유지 의무	10	금융회사등 고객확인제도 (CDD)	11	금융회사등 기록보관 의무	12	정치적 주요인물 위험관리
PC		PC		LC		LC		C		PC	
13	국경간 환거래시 AML 의무	14	송금업자 AML 의무	15	가상자산 사업자 AML 의무	16	지급/결제 투명성 강화	17	고객확인 위탁시 AML 의무	18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강화
C		C		C		C		C		LC	
19	고위험 국가 조치	20	의심거래 보고 (STR)	21	정보누설 금지	22	DNFBPs의 CDD 의무	23	DNFBPs의 STR 의무	24	법인 실소유자 확인·검증
LC		C		C		PC		PC		PC	
25	신탁 실소유자 확인·검증	26	금융회사 규제·감독	27	AML 당국 권한	28	DNFBPs 감독 당국 권한	29	FIU 독립성 권한	30	수사당국 책임
LC		LC		LC		PC		C		C	
31	수사당국 권한	32	현금휴대 반출입 관리	33	AML 통계 관리	34	STR 지침 피드백 제공	35	억제적 비례적 제재	36	UN 등 국제협약 이행
LC		LC		C		LC		LC		LC	
37	국제사법공조	38	동결·몰수 공조	39	범죄인 인도	40	기타 국제협력	* (미이행) Partially Compliant · Non Compliant			
LC		C		C		LC					

□ **11개 효과성 평가(Immediate Outcomes) 항목 → 5개 이행**

IO.1	IO.2	IO.3	IO.4	IO.5	IO.6	IO.7	IO.8	IO.9	IO.10	IO.11
정책/공조	국제협력	금융감독	예방조치	법인/신탁	금융정보	수사/기소	몰수	테러자금수사	테러정밀제재	확산금융제재
SE	SE	ME	ME	ME	SE	ME	SE	SE	ME	ME

* **HE**(높은 수준 효과성) > **SE**(상당한 수준) [이상 '이행'] > **ME**(보통 수준) > **LE**(낮은 수준)

2. 5차 라운드 평가 대비

□ **(평가기준 강화)** 등급별(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ICRG 점검국) 분류 기준이 제4차 라운드 평가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고,

○ 법·제도의 유무가 아닌 **법·제도의 효과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AML/CFT** 관련 법제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

< FATF 4차 라운드와 5차 라운드 평가기준 비교 >

등급	4차 라운드	5차 라운드
1	- (TC) PC 또는 NC 등급 8개 미만 - (TC) 핵심권고 5개 모두 이행(LC/C) - (IO) ME 또는 LE 등급 6개 이하	- (TC) PC 등급 5개 미만 & NC 0개 - (TC) 핵심권고 6개 모두 이행(LC/C) - (IO) ME 등급 5개 이하 & LE 0개
2	- (TC) PC 또는 NC 등급 8개 이상 - (TC) 핵심권고 1개 이상 NC/PC - (IO) LE 4개 포함, LE/ME 등급 7개 이상	- (TC) PC 등급 5개 이상 또는 NC 1개 이상 - (TC) 핵심권고 1개 이상 NC/PC - (IO) ME 6개 이상 또는 LE 1개 이상
3	- (TC) NC/PC 등급 20개 이상 - (TC) 핵심권고 3개 이상 NC/PC - (IO) LE 2개 포함, LE/ME 9개 이상 - (IO) LE 6개 이상	- (TC) NC/PC 등급 15개 이상 - (TC) 핵심권고 3개 이상 NC/PC - (IO) LE 2개 포함, LE/ME 9개 이상 - (IO) LE 6개 이상

□ **(5차 평가 등급)** 현재 우리나라 AML/CFT 법제를 근거로 평가받을 경우, **ICRG 점검 대상국** 편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특히, **특정비금융사업자 의무 부과, 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몰수를 통한 범죄 수익 환수 강화** 등 FATF 기준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필수적

효과성 항목	평가 영역	4차	5차 예상 등급
IO.1	위험·정책·조정	SE	ME (DNFBPs 미비)
IO.2	국제협력	SE	ME (NCBC 미도입)
IO.3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감독, 제재	ME	ME
IO.4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규제, 감독, 제재	ME	LE (법제 미비)
IO.5	법인·신탁 실소유자 투명성	ME	LE (법제 미비)
IO.6	금융정보(FIU)	SE	SE
IO.7	ML 수사·기소	ME	ME
IO.8	자산회수(몰수)	SE	ME (독립/확장 몰수 성과 미흡시)
IO.9	TF 수사·기소	SE	SE
IO.10	TF 예방·금융제재	ME	ME (DNFBPs 미비)
IO.11	확산금융제재	ME	ME (DNFBPs 미비)

※ **효과성 항목 11개 중 LE 2개+ ME 7개인 경우, ICRG 점검 대상국**으로 편입